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도종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4

발의연월일: 2020. 6. 8.

발 의 자:도종환·김영주·박 정

김철민 • 이정문 • 안민석

기동민 · 조승래 · 임호선

김원이 • 변재일 • 이원택

김병기 · 이상헌 · 정정순

민홍철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공항, 객차,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 지 않음.

한편, 이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의 경우에도 안내가 부족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 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,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

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2, 같 은 조 제4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5 신설). 법률 제 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의2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에 따른 지정·승인 등을 거쳐 관리·운 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
-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.
- 제62조제1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3의5.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 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	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
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다	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	
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	
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	
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의2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에
	따른 지정·승인 등을 거쳐
	<u>관리·운영 중인 관광지 및</u>
	<u>관광단지</u>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
	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
	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
	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
	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
	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
	하여야 한다.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6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62조(과태료) ①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3의4. (생 략) <u><신</u> 설>

4. ~ 6. (생 략) ② (생 략) 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 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 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